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5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피 고 인 A
주거
검 사 민수영(기소), 김정원(공판)
판 결 선 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중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이 상표권자인 'Viagra'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87168호),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가 상표권자인 'CIALIS'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91830호), 미

국 존슨 앤드 존슨사가 상표권자인 'PRILIGY'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30586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총 9,680정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비아그라 3,9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종 28,580개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 발기부전치료제 보관 플라스틱 용기 구매내역 확인 등에 대한), (주)○○플라스틱 보관용기 판매 내역, 수사보고(위조의약품 상표등록 여부 및 압수물 가액(정가)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채증사진

1. 유○○ SNS(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 의약품의 수량이 28,580정도로 적지 않고 그 정품가격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배 _____